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NGO모임 (문의 :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 010-4069-0322
nhk@pspd.org,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010-3212-9515
minhee.ryu@hopeandlaw.org (성소수자),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ahora76@gmail.com (노동), 어필 김종철 변호사 010-3176-9529 jckim@apil.or.kr (기업과 인권))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사회권 개선 권고 내려
날 짜 2017. 10. 10. (총 13 쪽)

보도자료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 강력하고 구체적인 사회권 개선 권고 내려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핵심 개선과제로 지적
사회지출 증액,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노동권 보장,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균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도입, 낙태
비범죄화 등 권고

1. 지난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하였다. 사회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8개월 내에 이행상황에 대하여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74개 국내 인권, 시민사회, 노동단체들(명단 별첨)이 모여 이번 사회권 심의를 공동으로 대응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이하

한국NGO모임)은 위와 같은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사회권 위원의 최종권고에서,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자금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공급망 등에서도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기업에 상당주의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최종권고에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긴급하게 촉구하였으며, 단체교섭권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복수노조 제도 악용 금지, 해고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임의적인 개입을 예방할 법개정 조치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회권 위원회는 최종권고에서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을 가속화시킬 것,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조치(여권압수금지, 착취폭행구금 근로감독, 가해자처벌),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보장, 균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등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제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급여요건으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같은 구체적인 권고들을 다수 제시하였다.

3. 그 밖에도 사회권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에 이번 최종권고를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의 완전 참여 보장할 것
- 헌법 개정시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할 것
-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철저히 이행하고, 부패 관련 통계를 마련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회권 규약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 ODA를 증액을 가속화하고,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비율 확대할 것
-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완전한 적용, 기간제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부를 금지하도록 입법 및 규제조치
- 농축산업, 어업, 가사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전면적 확대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보장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여성의 양육책임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 등)

-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파업이 금지된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을 보장할 것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결 및 적절한 연금액수 보장,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보장
-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를 위한 대책마련
- 홈리스 문제를 위한 장기적 해결책 마련, 사회주택 등 부담가능한 주택 증가, 주거비 규제, 강제퇴거에 대한 보호 제공 등 주거권 보호방안
- 자살예방노력 강화
- 정신보건 서비스 가용성과 접근성 확대 및 예산 증가
-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
- 소외계층을 특별히 고려한 감당가능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대처 등 문화다양성 증진

4. 74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한국 NGO 대표단은 이후 사회권 심의대응 시민사회활동 보고대회, 활동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74개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오픈넷,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30세 이상 레즈비언 모임 '그루터기',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즈비언 라디오 방송 제작팀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번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연대,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똥,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넷,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 NGO 참가단 명단 (가나다 순)

공익법센터 어필(김종철), 공익인권법모임 희망을만드는법(류민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박영아), 국제민주연대(나현필), 금속노조(정혜원), 민주노총(류미경),
참여연대(김남희)

▣ 별첨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최종권고 한글본 (번역)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의 네번째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1*}

1.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54차 및 제55차 회의(E/C.12/2017/SR.54 및 55)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규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 보고서(E/C.12/KOR/4)를 검토하고 2017년 10월 6일 개최된 제78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소개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4차 정기 보고서 제출과 질의 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E/C.12/KOR/Q/4/Add.1)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무처 대표단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높이 평가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당사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취한 다음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 (a) 2016년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 (b)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c) 2013년 난민법;
- (d)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e) 2012년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 고등교육법의 개정.

4. 위원회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환영한다.

C. 주된 우려 및 권고 사항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5. 제2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이행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제2차 계획이 당사국이 제출한 세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E/C.12/KOR/CO/3)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하여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시민사회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제2조 제1항).

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 (a) 가능한 빨리 제2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공표할 것;
- (b) 이번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3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에 완전히 반영하고 정부의 어떤 부처와 어떤 단위에서 언제까지 책임지고 이행할지를 명확하게 정할 것;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62 차 회기(2017년 9월 18일 ~ 10월 6일)에서 채택.

(c)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감사와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규약의 적용

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헌법 조항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사법부가 규약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내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규약의 권리가 당사국의 법리에 완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제2조 제1항).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제6조에 따라 규약이 실질적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a) 규약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사법 심사 가능성에 대한 판사, 변호사, 검사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 (b) 대중의 규약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c) 대표단이 언급한 개헌의 맥락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헌법으로의 완전한 편입. 그리고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규약의 국내 적용에 관한 일반 논평 9 호 (1998)를 제시한다.

구제 접근성

9. 위원회는 법률 구조에의 접근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이 인지대와 같이 법적 절차와 관련된 높은 비용으로 인해 방해받는다라는 점에 우려한다 (제2조 제1항).

10.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법적 절차의 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검토하도록 권고한다.

최대가용자원

11. 위원회는 장기적 절대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이 지속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 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효과적인 책무성이 담보되지 않고, 민간 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의 접근성, 감당가능성 및 서비스의 품질이 규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2조 제1항).

1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특히 소외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개선하기 위하여 더 재분배적인 재정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 지출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가속화할 것;

(b) 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에게 규약상의 의무를 알게 할 것;

(c) 공공기관과 민간 주체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부패

13. 위원회는 부패와 관련한 사법처리 사건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반부패 입법의 단점들도 우려한다 (제2조 제1항).

14.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청탁금지법을 원안대로 철저히 이행하고, 반부패 제도의 틀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부패와 관련된 사법처리 사건을 포함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반부패 장치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15.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고에 감사하며, 위원회는 여전히 인권위의 조사권한이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에 관한 것에만,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는 것에 우려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상 권리의 이행의 관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규약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0호(1998)를 제시한다.

기업과 인권

17. 위원회는 당사국에 소재하거나 당사국의 사법관할에 있는 기업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실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공공 금융기관들이 기업들과 사업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및 (원조)용자를 해줄 때에 인권관련 사항들을 고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18. 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 내의 기업과 인권 부분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들과 이 기업들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란 기업들이 사회권규약의 인권을 위반할 위험들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시키나,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기업들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b)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용자, 원조, 보조금 지급의 공여를,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준수여부와 연계할 것;

(d) OECD 국내연락사무소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참여 및 효과성을 향상할 것. 이는 인권기준들에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국내연락사무소가 조정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어나감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19. 위원회는 당사국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무에 대한 일반논평 24호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공적개발원조 (ODA)

20. 위원회는 당사국의 ODA(0.14%)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 총소득의 0.7%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제2조 제1항).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a) 국민총소득의 0.7%를 국제적 약속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ODA 수준 향상을 가속화 할 것과 (b)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증여율(유상원조 대비 무상원조의 비율)의 더 나은 균형을 찾을 것을 권고한다.

차별금지법

22.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의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차별금지법의 도입의 지연에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제2조 제2항).

23.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일반 논평 제20호(2009)를 제시한다.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24. 위원회는 균형법에서 동성 간의 관계를 범죄화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동성 커플들이 여러 규약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에 노출된다는 점도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공공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 (제2조 제2항).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동성 간의 관계를 범죄화하는 균형법의 조항을 폐지할 것;

(b)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

(c) 채택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d)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비시민

26. 위원회는 당사국 헌법에 포함된 권리가 시민들에게만 부여되고 비시민은 완전한 사회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출생등록제도와 학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비시민이 사회 보장 제도 및 공공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려한다 (제2조 제2항).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의 권리가 국적에 근거한 차별없이 행사되어야 함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비시민이 국가 사회 보장 제도에 등록하고,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아동의 보편적 출생 등록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당사국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2017. 3. 13.자 성명’을 제시한다.

비전형고용

28. 위원회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조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임시고용 등 비전형 고용이 만연한 상태라는 점에 여전히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대기업들이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위험 부담을 이전하기 위해 하청, 파견, 특수고용에 기대며 노동자들로부터 노동권 보호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제7조).

29.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지 않는 비전형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a)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 (b)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7두1729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할 것 (c)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범위

30. 위원회는 농축산업, 어업과 가사 등 노동자들이 불공정하고 비우호적인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들이 근로기준법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보호하는 법률들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제7조, 제9조).

31. 위원회는 당사국에 근로기준법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보호하는 법률들의 적용을 경제의 모든 부문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농축산업, 어업과 가사 등 특정 산업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율로 저하된 노동권을 설정하는 대신,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더 높은 침해 위험에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적절한 보수

32. 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최근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7조).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재차 강조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모든 부문에 적용되도록 할 것과 근로감독과 [위반시] 충분한 처벌을 통해 준수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성별 임금 격차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성별임금격차가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한다 (제7조).

35.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한다:

(a) 여성의 양육 책임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시간제 일자리 쏠림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것;

(b) 보육 시설 수, 탄력근무제 및 육아휴직 이용률 등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것;

(c) 부문간 직무평가를 포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 이행을 감독할 것.

이주노동자

36. 얼마간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한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을 하면서도, 위원회는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변경시 이주노동자들을 사용자의 권한에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상의 조건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에 여전히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농업과 어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착취가 강제노동에 이른다는 보고에 우려를 한다 (제6조, 제7조).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고용허가제하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노동관련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권고(30, 31항)를 염두에 두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여권 압수 관행을 예방하고, 착취와 사실상 구금과 신체적인 학대에 관한 보고에 대해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포함해, 어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가 확실히 보호되고 존중되게 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제105호를 비준할 것을 권한다.

파업권

38. 위원회는 (a) 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당사국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점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관한 정의가 넓다는 점에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노조할 권리

40. 법이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위원회는 기업들이 이를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 등에 대해 우려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 노동력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8조).

41. 위원회는 당사국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제도가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결사의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 98호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사회보장의 권리

42. 위원회는 일부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자격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에게 부양을 제공하는 의무[부양의무자기준]의 적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려는 당사국의 의도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현재 급여가 필요한 개인과 가구가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특정 사회보장급여의 액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제9조).

43. 위원회는 사회보장 급여의 적격성 기준으로 가족구성원을 부양하는 가족의 의무(부양의무자 기준)를 완전히 폐지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보장 혜택의 액수가 충분할 수 있도록,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혜택이 그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사회 보장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제19호(2008)를 제시한다.

국민건강보험

44.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당사국의 계획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의 제한적인 보장범위가 개인 의료 비용과 고가의 민간 보험료를 통하여 가계에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제9조 및 제12조)

45. 고도로 사유화된 보건 체계의 맥락에서 위원회는 의로서비스가 특히 소외된 그룹들이 의로서비스를 감당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의 적절성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비전염성 질병을 포함하여 질병 및 건강상태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시스템에서 적격성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보편적 보장범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고령자

46. 고령인구의 복지가 당사국의 최우선 과제임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노인 빈곤의 만연과 요양시설에서의 학대를 포함한 노인 학대 보고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 (제10조).

47.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인들이 존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국민연금의 자격 요건의 적절성과, 노인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수령액을 보장할 것;

(b)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집에 머물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보장할 것;

(c) 학대의 근본원인을 확인하고 다룰 것;

(d) 요양시설의 모니터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노인학대의 신고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대를 방지할 것.

아동학대

48.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가족내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며, 특히 부적절한 보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관하여 우려한다 (제10조).

4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아동과 접촉하는 전문가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개인에게도 신고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

(b)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격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규정 및 인프라가 마련되도록 할 것;

(c) 학대 아동 피해자를 위한 가족 유형 대체 돌봄을 홍보할 것.

식수권

50. 위원회는 당사국의 강 오염에 대한 보고 및 안전한 식수의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에 우려한다 (제11조).

51. 위원회는 당사국이 수자원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음용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식수권에 대한 일반논평 15호(2002)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주거

52. 위원회는 당사국의 주거 정책이 홈리스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a) 적절하지 않은 주거에 거주하는 개인과 가구의 숫자가 많다는 점, (b) 주택부족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 높은 주거 비용, (c) 강제 퇴거에 대한 적절한 세입자 보호 장치 부족에 대하여도 우려한다 (제11조).

53.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주택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낼 것을 촉구한다:

(a) 홈리스의 근본원인을 다루고 홈리스 개인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것;

(b) 사회 주택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킬 것;

(c) 불합리한 주거비용을 포함하여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

(d) 협의권, 적절한 절차상 보호 장치, 적합한 대체주택에 대한 접근권 또는 적절한 보상을 포함하여, 법률이 모든 그룹에게 퇴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4호(1992)와 강제퇴거에 관한 일반논평 제7호(1997)에 주목할 것을 권고한다.

자살

55.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자살율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연속적인 실행과 게이트키퍼 시스템의 이행을 인지하면서도, 위원회는 여전히 높은 자살율의 근본적인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56. 위원회는 교육 및 노동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그리고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정신 건강

57. 위원회는 당사국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우려한다 (제 12 조).

58.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신 보건 서비스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고, 특히 지역 사회 기반의 진료를 장려하고 정신 보건 서비스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는 것을 권고한다.

성 및 재생산 건강의 권리

59. 위원회는 당사국에서의 낙태의 범죄화를 우려한다 (제 12 조).

60. 위원회는 당사국이 낙태를 겪은 여성을 비범죄화하여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과 존엄성 보호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성 및 재생산 건강에 관한 일반 논평 제22호(2016)를 제시한다.

HIV/AIDS 감염인의 보건의료

61.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에게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의료 인력들에 대한 보고에 우려한다 (제12조).

62.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이 의료에 차별없이 접근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건강 기준에 대한 일반 논평 제14호 (2000)의 차별 금지 및 동등한 대우와 관련한 18문단과 19문단에 대한 당사국의 주목을 요청한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63.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가구는 감당할 수 없는 야간 수업과 과외활동에 대한 의존이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에의 평등한 접근을 제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개인의 취업기회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13조 및 제14조).

64. 위원회는 소외계층 사람들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감당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학교 커리큘럼의 질과 전달을 보장함으로써 야간수업과 과외활동에 의지할 필요성을 제한할 것;

(b) 중등 및 고등교육 진학 시스템을 모두에게 역량을 기준으로 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개정할 것;

(c) 야간 수업 및 과외활동에 의존을 줄이도록 취해진 규제 조치들의 영향을 모니터할 것;

(d) 고용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의 평등적 기능을 추구할 것.

문화 다양성

65. 위원회는 당사국 인구 중 다문화주의의 수용 정도가 낮다는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비시민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인지하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제15조).

66. 위원회는 다음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a) 비시민에 대한 편견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구의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장려할 것;

(b) 문화적 다양성이 받아 들여지는 정도에 관하여 취한 조치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

67. 위원회는 당사국에 모두가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1호(2009)를 제시한다.

D. 그 밖의 권고들

68. 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제 15 조 제 1 (b)항에 따라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에서 추가적이고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69.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대한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장려한다.

70. 위원회는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및 모든 사람의 강제 퇴거에 관한 국제 협약의 비준을 당사국이 검토 할 것을 권고한다.

71. 위원회는 규약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이행함에 있어 그 안에 담긴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달성은 당사국이 진전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공공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유자로 대우함으로써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 참여 및 책무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가능목표를 실행한다면 누구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양한 인구 집단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달성한 진전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인권 지표(HRI/MC/2008/ 3 참조)에 대한 개념적이고 방법론적 틀을 제시한다.

73. 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를 사회의 모든 분야, 특히 국회의원, 공무원 및 사법 당국자들에게 널리 배포하며, 다음 정기 보고서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위원회는 다음 정기 보고서 제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부기구 및 기타 시민 사회 구성원들과 현재의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와 국가 수준에서의 협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장려한다.

74. 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견해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에 따라 이 최종 견해 채택 후 18 개월 이내에 위 단락 18 (a) (기업과 인권), 23 (차별금지법) 및 41 (노조할 권리)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요청된다.

75.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2022년 10월 31일까지 2008년 위원회가 채택한 보고 지침(E/C.12/ 2008/2)에 따라 준비된 제5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당사국이 국제 인권 조약 상 보고에 관한 조화된 지침(HRI/GEN/2/Rev.6, 제1장) 에 따라 공통 핵심 문서를 갱신할 것을 요청한다.